

●국토교통부령 제90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요청 기간) 법 제26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자동차가 침수로 인하여 전손(全損) 처리 결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시하여야”를 “제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제78조제1호 중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제1항에”를 “「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제1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임시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자동차점검(정비·원상복구) 명령서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제63조에 따른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을 받은 자동차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79조의2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손(全損) 처리된 이후의 수리에 관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를 말한다]”를 “(전손 처리된 이후의 수리에 관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를 말한다)”로 한다.

제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적합여부”를 “적합 여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다만, 정기검사”를 “이 경우 정기검사”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으로, “해당하지 않은 때에는 적합판정을”을 “해당하지 않으면 적합 판정을”로, “이의 시정을”을 “그 시정을”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6호를 삭제한다.

6. 전기·전자장치

가. 엔진정지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함

나.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의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의 불량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경고음발생장치 미설치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

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52호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의 절연상태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

제8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자동차중 부적합판정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는”을 “자동차 중 부적합 판정을 한 자동차에 대해서는”으로, “사유등”을 “사유 등”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적합판정(시정권고사항을 포함한다)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는”을 “적합 판정(시정권고사항을 포함한다)을 한 자동차에 대해서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조치를 하여야”

를 “조치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규검사 : 별지”를 “신규검사: 별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정기검사 : 자동차등록증”을 “정기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동차등록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 중 “자동차등록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자동차 : 별지”를 “자동차: 별지”로 한다.

4. 임시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검사적합 여부를 기재

제80조제6항 본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80조의3제2항 중 “촬영하는 때에는”을 “촬영하는 경우에는”으로, “전체가 촬영되도록 하여야”를 “전체를 촬영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앞면은 검사진로로 진입할 때에, 뒷면은 검사진로로부터 진출할 때에 각각 촬영해야 한다.

제80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촬영된 검사장면을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 등록번호판의 등록번호가 식별될 수 있도록 선명한 화질의 검사장면을 전송해야 한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적합판정”을 “부적합 판정”으로,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을 “재검사를 받으려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기간(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내에”를 “기간(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 내에”로,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를 제시하여야”를 “자동차를 제시해야”로 한다.

제90조제1항 중 “별표 20과”를 “별표 19와”로 한다.

제91조제1항 본문 중 “별표 20”을 “별표 19”로, “제92조에 따른 교육의 수료일 및 수료번호를 기록한 서류를”을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교육수료증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93조제2항에”을 “제92조제2항에”로 한다.

제92조 및 제93조를 각각 제93조 및 제92조로 하고, 제93조(중전의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11장 제4절에 제93조의2 및 제9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기술인력의 교육)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이하 “검사원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신규교육: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기술인력이 최초로 받아야 하는 교육
2. 정기교육: 기술인력이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② 검사원교육의 내용 및 방법은 별표 20과 같다.

③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중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에 대한 검사원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은 검사원교육을 받은 기술인력에게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전문교육기관은 검사원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이수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교육 수료

일 등을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제93조의2(전문교육기관의 지정) ①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일 것

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나. 제149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

다. 제14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연합회로서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2. 별표 20의2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②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의4서식의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설·장비 및 인력 보유 현황

2. 교육과정편성표(교육내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계획서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58호의5서식의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은 매년 12월 말일까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을 신청한 연도의 교육계획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운영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93조의3(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9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는 등 출·결석 사항과 교육 이수사항의 기록 및 관리가 부실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1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의 범위안에서”를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비작업의 범위에서”로, “각호와 같이”를 “각 호와 같이”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기에너지만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정비업등록을 하려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

제13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시하여야”를 “제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80센티미터”를 “75센티미터”로 한다.

제1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제시하여야”를 “제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폐차요청일전 3일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한다”를 “폐차요청일 전 3일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압류등록이된 자동차에 한한다”를 “압류등록이 된 자동차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5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치를 하여야”를 “조치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의”를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로, “확보보고, 교육, 해임명령”을 “확보보고 및 해임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의2 및 제1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5조의2에 따른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요청 기간

14의2. 제93조제2항에 따른 검사원교육의 내용 및 방법

14의3. 제93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별표 15 제1호나목3)을 삭제한다.

별표 15 제2호가목11)나)에 (9) 및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연료전지 등 고전원전기장치의 절연 상태가 양호할 것	자) 전자장치진단기로 고전원전기장치의 절연저항 관련 고장진단코드를 확인. 다만, 전자장치진단기로 진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기장치의 고장경고등 점등 여부 확인
(10) 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연료전지 등 고전원전기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차) 전자장치진단기로 고전원전기장치의 고장진단코드를 확인. 다만, 전자장치진단기로 진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기장치의 고장경고등 점등 여부 확인

별표 15 제2호가목11)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전자장치 (1) 원동기 전자제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2)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구동력제어장치, 전자식차	가) 전자장치진단기로 각종 센서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 다만,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전자장치진단기로 진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맨눈으로 설치 여부 확인
--	--

동제한장치, 차체자세제어장치, 에어백, 순항제어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안전운전 보조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3) 저소음자동차의 경고음발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4) 후방보행자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나) 전자장치진단기로 경고음발생장치의 고장진단코드를 확인. 다만, 전자장치진단기로 진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행상태에서 경고음 발생 여부 확인 다) 후방보행자 안전장치의 작동상태 확인
---	---

별표 15 제2호나목11)나)에 (9) 및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연료전지 등 고전원전기장치의 절연상태가 양호할 것 (10) 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연료전지 등 고전원전기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자) 전자장치진단기로 고전원전기장치의 절연저항 관련 고장진단코드를 확인. 다만, 전자장치진단기로 진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기장치의 고장경고등 점등 여부 확인 차) 전자장치진단기로 고전원전기장치의 고장진단코드를 확인. 다만, 전자장치진단기로 진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기장치의 고장경고등 점등 여부 확인
---	---

별표 15 제2호나목11)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전자장치 (1) 원동기 전자제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2)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구동력제어장치, 전자식차동	가) 전자장치진단기로 각종 센서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 다만,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전자장치진단기로 진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맨눈으로 설치 여부 확인
--	---

제한장치, 차체자세제어장치, 에어백, 순항제어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안전운전보조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3) 저소음자동차의 경고음발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나) 전자장치진단기로 경고음발생장치의 고장진단코드를 확인. 다만, 전자장치진단기로 진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행상태에서 경고음 발생 여부 확인
(4) 후방보행자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다) 후방보행자 안전장치의 작동상태 확인

별표 19 및 별표 20을 각각 별표 20 및 별표 19로 하고, 별표 20(중전의 별표 19)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0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1 제1호 표의 제작검정 과형시험란의 검정설비명란 중 “오슬로스코프”를 “오실로스코프”로 한다.
별표 21의2 제2호 주)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주)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31조제2항제3호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의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탄화수소측정기, 매연측정기,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및 압력측정기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별지 제47호서식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		수수료
튜닝검사	1. 「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사실증명서 2. 튜닝승인서 3. 튜닝 전·후 주요제원대비표 4. 튜닝 전·후의 자동차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튜닝하려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검사대행자가 정한 금액
임시검사	자동차점검(정비·원상복구) 명령서 (제63조에 따른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을 받은 자동차만 해당합니다)	
수리검사	1. 자동차정비업자가 발급한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점검·정비명세서(전손 처리된 이후의 수리에 관한 점검·정비명세서를 말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제3호에 따른 사진 3.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제출을 요구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보험회사가 발급한 전손 처리에 관한 확인서(사고일자, 사고원인 및 고장 또는 파손이 된 구조나 장치의 명칭이 기재된 것을 말합니다) 나. 휠얼라인먼트 측정 결과 다. 손상된 구조 또는 장치에 대한 수리 전 사진	

별지 제58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58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9호의2서식 안내사항란 제3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인증대체부품: D

별지 제89호의3서식 안내사항란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부품내역란의 코드란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기재해야 합니다.

가. 자동차 제작사 및 부품업체가 공급하는 신품(자동차 제작사의 경우에는 사후관리용 보증부품을 포함합니다): A

나. 재제조품: B

다. 중고품(재생품을 포함합니다): C

라. 인증대체부품: D

마. 수입부품: F

별지 제93호서식의 말소등록 대행여부란 다음 중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제1항”을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2 및 제58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및 제14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 제2호 중 “발급한 것에 한하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를 “발급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로 하며, 같은 란 제4호 중 “자동차에 한정합니다”를 “자동차만 해당합니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89호의2서식 및 별지 제89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0조제2항제6호 및 제16호, 제131조제2항제3호, 별표 15 및 별표 21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92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기술인력은 이 규칙 시행일에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전문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정비연합회는 이 규칙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93조의2 및 별표 20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 지정의 효력은 상실한다.

[별표 20]

검사원의 교육내용 및 방법(제93조제2항 관련)

1. 교육내용

가. 신규교육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내용
인성교육 및 자동차 관련 법령	20시간 이상	• 자동차검사 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 및 자세 함양 • 자동차 관련 법령(「자동차관리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대기환경보전법」,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등) • 검사소 지도점검 및 부실검사 사례(처분조항 및 사례 포함)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및 불법튜닝 사례 • 검사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자동차검사 및 정비관련 신기술 •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등 첨단자동차의 구조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자동차 검사기기	5시간 이상	• 검사기기의 구조기준 및 취급요령 • 자동차검사 관리시스템 및 검사업무 전산처리 절차 및 방법
자동차 검사실무	10시간 이상	• 검사실습(첨단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실습을 포함한다) 및 행정관리 요령

나. 정기교육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내용
인성교육 및 자동차 관련 법령	8시간 이상	• 자동차검사 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 및 자세 함양 • 자동차관리법령 • 검사소 지도점검 및 부실검사 사례(처분조항 및 사례포함)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및 불법튜닝 사례 · 검사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자동차검사 및 정비관련 신기술 ·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등 첨단자동차의 구조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자동차 검사기기	2시간 이상	· 검사기기의 구조기준 및 취급요령 · 자동차검사 관리시스템 및 검사업무 처리방법
자동차 검사실무	4시간 이상	· 검사실습(첨단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실습을 포함한다) 및 행정관리 요령

2. 교육방법

교육과목	교육방법
인성교육 및 자동차 관련 법령	이론교육
자동차 검사기기	이론 및 실습교육
자동차 검사실무	

비고

1. 자동차 검사기기 및 검사실무는 실습교육이 50%이상 되도록 편성해야 한다.
2. 신규교육은 4시간 이상, 정기교육은 2시간 이상 결강하면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다.

[별표 20의2]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93조의2제1항 관련)

1. 시설·장비 기준

구분	기 준
가. 사무실	30m ² 이상(타 사무실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나. 강의실	60m ² 이상
다. 실습실	100m ² 이상, 검사진로 1개소 이상
라. 전산시스템	인터넷 교육 신청 및 접수, 출·결석 상황관리, 수료증 발급 및 교육이력의 기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전산시스템
마. 실습장비	1) 엔진 1대 이상 2) 전기자동차 1대 이상 3) 내연기관자동차 3대 이상(승용차, 승합차 및 화물차 각 1대 이상) 4) 전기자동차 검사를 위한 검사기기 및 안전장비 1조 이상 5) 별표 18 제1호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검사용 기계·기구 6) 택시미터 사용 검정기기 1대 이상
비고 - 교육시설은 교육기관이 소유하거나 교육을 시행하는 동안 임대차계약이 유지되어야 하고, 강의실 및 실습실은 인접한 토지 내에 있어야 한다. - 강의실에는 책상·의자 및 빔 프로젝터·환등기·스크린 등 교육에 적합한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 실습실에는 실습과목에 필요한 장비와 안전을 위한 소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검사진로의 길이·너비·높이는 별표 18 제1호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검사진로의 길이·너비·높이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진로 길이는 9m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인력 기준

- 가. 교육업무 담당 직원은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 나. 전임강사는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 다. 강사의 자격기준

교육과목	기 준	인원
1) 인성교육	가) 고객만족, 갈등관리 등 고객응대 관련 분야 업무·연구 경력이 10년 이상 또는 강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자동차검사 분야에서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 또는 연 구·교수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자동차 검사 기기 (전산 외) 및 자동차 검사 실무 겸임 가능)
2) 자동차 관련 법령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자동차검사(자동 차 배출가스검사를 포함한다) 분야에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자동차검사 분야에서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 또는 연 구·교수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자동차 검사기기 (전산)	가) 자동차검사 전산분야에서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자동차검사 분야에서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자동차 검사기기 (전산 외) 및 자동차 검사실무	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정비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하고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 분야에서 실무 경력이 5 년 이상인 사람 나) 자동차 및 기계공학 계열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자동차검사 분야에서 실무 또는 연구경력이 5 년 이상인 사람 다) 자동차검사용 기계·기구(제동시험기, 전조등시험기 등) 또는 자동차배출가스 측정 장비(차대동력계, 배출가 스분석기, 매연측정기 등)의 형식승인, 정도검사 분야에 서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자동차·기계·전기 ·전자계열의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자동차검사 분야에 서 실무 또는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마)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교수·부교수·조교수의 자 격을 갖추고 자동차검사 분야에서 실무 또는 연구 경력 이 2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비고: 외부강사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강의가 가능하여야 한다.

제 호

교육수료증

- 성명 :
- 생년월일 :
- 교육과정명 :
- 교육분야 :
- 교육기간 :

위 사람은 「자동차관리법」 제4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3항에 따라 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	기관 또는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신청내용	교육명칭		
	교육목적		
	교육운영 장소		
	홈페이지		
	개설예정일		

「자동차관리법」 제4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또는 대리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시설, 장비 및 인력 보유 현황 1부 2. 교육과정편성표(교육내용을 포함합니다) 및 운영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검토·심의	→	결재	→	지정서 작성	→	교부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장관)		처리기관 (국토교통부장관)		처리기관 (국토교통부장관)		처리기관 (국토교통부장관)		처리기관 (국토교통부장관)

제 호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 기관(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주 소:
- 교육명칭:
- 교육목적:
- 교육운영 장소:

「자동차관리법」 제4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2제4항
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침수로 인한 전손(全損)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는 일정기간 내에 해당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하도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도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 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은 주기적으로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051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가 폐차를 요청하는 기한을 전손 처리 결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로 정하고, 자동차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서 자동차등록증을 삭제하며,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이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기자동차를 검사하는 경우 전자장치진단기를 이용하여 고장진단코드를 확인하도록 검사기준을 정하고, 전기자동차만을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매연측정기 등 전기자동차 정비에 불필요한 장비를 갖추지 않도록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